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12.20(금)

산 업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11.21.

나. 제안자 : 허인환, 이도형, 이한구, 김정현, 조영홍 의원

다. 회부일자 : 2013.11.21.

라. 상정일자 : 2013.12. 5(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조영홍 의원
- 검토보고 :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
- 심사내용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격차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및 고용안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 담부서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안 제9조)
-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
 -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최저임금 준수 및 취업촉진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
 -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에 관한 상위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임.
- 또한, 비정규직의 범위를 용역, 도급 등의 근로자들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고용환경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는 각종 고용문제를 심화시키고 고용불안, 저임금, 사회보장 배제, 사회양극화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수반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주된 원인이 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차별시정 및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시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5. 회의결과 - 원안가결

6. 토론요지

가. 찬 성 : 허인환·이한구·윤계상·김영분·김정현·안병배·조영홍 의원

나. 반 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제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4. “무기계약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근거하여 연도별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정규직근로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대상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목표의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와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를 매년 1월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근로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부계획 추진 실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비정규직근로자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노동단체의 대표
3. 경영 및 경제단체의 대표
4.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5.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
6.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1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 채용 시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차별금지)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

규직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시장은 민간기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최저임금 위반사항의 신속한 처리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기금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우수기업 선정기준,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